

【 문제-1 】 (30점)

뮤지컬 제작자 겸 공연기획자 A는 뮤지컬 형식의 피겨 스케이팅 갈라쇼, ‘피겨스타스’를 기획하였다. A는 ‘피겨스타스’를 90분 분량으로 구성하고 대본을 직접 작성한 후 해당 대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다. 그리고 ‘피겨스타스’는 아래의 인원들이 참여하여 제작되었다.

B: 연출가	C: 안무가
D: 클래식 음악 편곡자	E: 무대 감독 등 참여 스태프
F: 피겨스케이팅 선수 10인	G: 뮤지컬 배우 5인

‘피겨스타스’는 서울 잠실의 아이스링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현재 지방 순회 공연을 앞두고 있다.

- (1) A는 자신이 ‘피겨스타스’를 구성하였고 대본을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자신이 ‘피겨스타스’의 저작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피겨스타스’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A가 ‘피겨스타스’의 저작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 방법 3가지를 제안하시오. (9점)
- (2) 5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스포츠 영상 전문 크리에이터 H는 ‘피겨스타스’ 잠실 공연 당일, 아이스링크장 관객석에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F)과 뮤지컬 배우들(G)의 사진과 영상을 공연 시간 내내 촬영하고 다음 날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5분 정도의 분량으로 편집한 후, 제작진 및 출연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동영상 채널에 ‘피겨스타스@뮤지컬’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방송하였다. A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곧 진행될 지방 공연 흥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따로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연출가(B)와 선수들(F), 배우들(G) 등은 이를 알고 자신들의 허락 없이 사진과 영상을 올린 H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B, F, G의 저작권법상 지위 및 B, F, G 각자가 H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각자의 법적 권리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1점)
- (3) ‘피겨스타스’의 지방 순회 공연이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약 10개월이 지나, ‘피겨스타스’와 유사한 형식과 내용의 ‘뮤지컬리 피겨’가 공연되었다. ‘뮤지컬리 피겨’의 제작팀(I)은 ‘피겨스타스’의 구성, 안무, 음악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 ‘피겨스타스’를 기획하고 대본을 쓴 A, 안무를 창작한 C, 클래식 음악을 창작적으로 편곡한 D 각자의 저작권법상 지위 및 A, C, D 각자의 입장에서 I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각자의 저작재산권과 이에 대하여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 구제방안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 문제-2 】 (20점)

A는 어린이 파티 기획업을 하고 있다. A는 파티 준비에 필요한 캐릭터 이미지 파일을 캐릭터 대리중개업을 하는 B로부터 구매하여 C 등 고객들에게 유상 제공하고 있다. B가 운영하는 캐릭터 구매 사이트의 서비스 약관에는 “구매한 캐릭터는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A는 구매한 캐릭터 이미지 파일을 고객들에게 보내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매번 설명하고 있다.

- (1) 고객 C는 A를 통해 국내의 유명 캐릭터사 D의 캐릭터 이미지 파일을 구매하여 이를 자신의 6세 아들이 생일 파티에 입을 티셔츠에 그대로 컬러로 프린트하였고 생일 파티 아이টে 부착하기 위하여 스티커로 5부를 그대로 컬러 인쇄하였다. C의 행위의 법적 의미 및 D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시오. (8점)
- (2) 이후 고객 C는 아들의 친구들을 초청하여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아들의 티셔츠와 파티 아이টে 부착한 스티커가 잘 보이도록 파티 장면을 촬영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E의 공개 게시판에 올렸다. 그런데 E는 당시 D로부터 구체적으로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차단 요구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고, 기술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C의 행위의 법적 의미 및 D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그리고 E의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하시오. (12점)

【 문제-3 】 (30점)

조각가 A는 시공사 B의 요청에 따라 신축아파트 문주(門柱)를 대신하여 아파트 정문 위치 좌우에 각 설치할 2개의 높이 9m 조형물(이하, 문주조형물이라 함)을 설계하였다. 이 문주조형물 설계에 따르면 기단(基壇)은 석재, 그 위에 설치되는 조형물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다. 조각가 A는 외부에서 신축아파트를 바라볼 때 왼쪽 문주조형물 좌우에는 봄과 여름을, 오른쪽 문주조형물 좌우에는 가을과 겨울을 표현함으로써 2개의 문주조형물이 좌우방향으로 춘하추동(春夏秋冬)을 순서대로 상징하도록 하고, 나아가 2개의 문주조형물 전체가 우주의 생성과 확산 및 인간의 탄생과 번영의 철학을 담도록 설계하였다. 시공사 B는 조각가 A에게 작품설계비 8,000만원을 지불하고 조각가 A의 설계에 따라 신축아파트 정문 위치에 문주 대신 문주조형물을 시공 설치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에서 신축아파트를 바라볼 때 문주조형물이 좌측(서쪽)부터 우측(동쪽) 방향으로 춘하추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조각가 A와 아무런 협의 없이 외부에서 신축아파트를 바라볼 때 우측(동쪽)에서 좌측 방향으로 춘하추동이 표현되도록 좌우 문주를 서로 교체하고 각각 180° 회전시켜 변경 설치하였다.

고등학교 기술과목 교사 C는 「건축과 조경」이라는 정기간행물에서 이 문주조형물의 사진과 단지 내 배치도를 보고 이를 수업자료에 수록하여 자신의 수업에 사용하고 중간고사에 이 사진과 배치도를 이용하여 문제를 출제하였다.

업체 D는 석재와 스테인리스로 구성된 문주조형물을 1/30로 축소한 플라스틱 모형을 제작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다.

- (1) 조각가 A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10점)
- (2) 조각가 A가 교사 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교사 C가 조각가 A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시오. (10점)
- (3) 조각가 A가 업체 D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10점)

【 문제-4 】 (20점)

화랑 A는 1990년부터 북한 유명 작가들의 서명이 있는 유화(油畫, Oil Painting)를 구매하여 수집해 오다가 최근 일부 작품들을 작가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하여 디지털그림파일로 보관하기 시작하였다. 건설사 B는 A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A의 그림파일 중 20개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아 컬러로 출력하고 액자에 넣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신축아파트 복도 등에 설치하였다. 대학교수 C는 A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A의 그림파일 100개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아, 남북한 회화작품을 소개·비평하는 「남과 북의 만남」이라는 300페이지 분량의 E-book에 이 그림파일 모두를 삽입하여 발행하였다. 한편, 언론사 D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받아 위 신축아파트의 건축적 우수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신축아파트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던 중 건설사 B가 설치한 북한그림(P1)이 3초 정도 포함되는 15분짜리 방송물을 제작하여 보도하였다.

대학교수 C의 발행과 언론사 D의 보도에 대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유명 작가의 상속인(이하, 북한작가상속인이라 함)은 E-book에 게재된 작품 1점(P2) 및 방송에 노출된 작품(P1)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 (1) 화랑 A 및 건설사 B가 북한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십시오. (8점)
- (2) 북한작가상속인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대학교수 C가 항변할 수 있는 주장과 논거를 제시하십시오. (4점)
- (3) 북한작가상속인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언론사 D가 항변할 수 있는 주장과 논거를 제시하십시오. (8점)